



중앙전파관리소가 하는 일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1 안전한 전파이용환경 조성

- 전파감시 및 전파종합관제
- 방송통신설비 안전점검 및 기술기준 적합조사
- GPS 전파교란 대응 및 중요통신망 보호
- 국내 위성보호 및 국내외 위성감시
- 전파혼신 처리 및 불법무선국 조사·단속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조사·단속
- 불법감청설비 조사·단속 및 탐지업 등록
- 전파차단장치 제조·수입 등 인가 및 도입신고

2 정보통신시스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 운영
- CISO 대상 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

3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용 준수 관리·감독
-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표준음량 기준 준수 조사
- TV방송 수신장애 조사
-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실태검사

4 전파·방송통신 행정서비스 제공

- 전기통신사업자 등록·관리 및 통신설비 제공제도 활성화
- 무선국 허가·검사 및 방송국 검사
- 전파환경 측정 서비스
- 정보통신·방송 분야 비영리법인 허가·감독

5 국제교류 협력 및 기술지원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
- 국산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 지원
- 어린이 전파교실

중앙전파관리소

1947년부터 우리나라의 전파를 관리하고,
방송통신 환경을 지켜온 국가기관입니다.
국민이 편리하게 방송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emsi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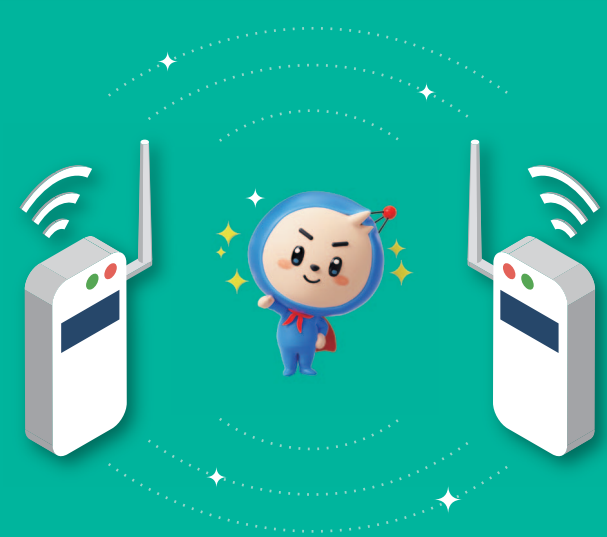
민원상담 080-700-0074 / 02-3400-2000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중앙전파관리소	(05830)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02-3400-2000
위성전파감시센터	(17413)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신암로 100	031-644-5900
서울전파관리소 - 서울북부사무소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11604)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52	02-2680-1700 031-849-5800
부산전파관리소	(46703)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6번길 67-17	051-974-5100
광주전파관리소	(58214)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매성길 178-24	061-330-6800
강릉전파관리소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033-660-2980
대전전파관리소 - 당진사무소	(35283)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31754)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덕평로 730	042-520-4100 041-360-2800
대구전파관리소	(42043) 대구시 수성구 동원로 90	053-749-2800
전주전파관리소	(55316)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14	063-260-0070
제주전파관리소	(63037)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064-740-2800
청주전파관리소	(28567)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57길 30	043-261-5811
울산전파관리소	(45013)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위곡2길 157-6	052-231-8810

안전하고 편리한 전파방송통신, 함께하는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 허가·신고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간이무선국에 대해 알아보까요?

간이무선국은 크게
휴대용과 고정용으로 구분됩니다.

휴대용 간이무선국

개념 휴대용 간이무선국이란, 간단한 업무연락용으로 휴대하여 들고 다니며 통신을 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입니다.

무선국 검사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가 면제됩니다.

고정용 간이무선국

개념 고정용 간이무선국이란, 간단한 업무연락용으로 휴대는 하지 않고, 일정한 곳에 고정하여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이며,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차량용 등이 있습니다

무선국 검사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 시 무선국 준공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무선국의 개설 등 안내

간이무선국의 개설 및 유효기간

휴대용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개설신고의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별도 갱신(재허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정용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개설허가의 대상으로,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허가 기간 중에 허가 갱신(재허가)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 허가 대상 무선국은 면허세 부과 대상으로 연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간이무선국 재허가, 전파사용료 안내

간이무선국 재허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전자민원센터를 이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만약 재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으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휴대용을 제외한 고정용 간이무선국

허가 유효기간 5년

만료일 6월 30일

신청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3.1.~4.30.)

※ (참고) 만료일 지정은 허가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월 30일에 종료되도록 시행

전파사용료

휴대용 및 고정용 간이무선국은 1국당 분기별 3천원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며, 일사납(1년:4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의) 전파사용료 체납 시 가산금 발생 및 행정처분(허가·신고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휴지 및 폐지

■ **휴지:**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휴지 신청을 할 수 있고, 1회 신청 시 최대 1년 휴지가 가능하며, 휴지 신청이 없으면, 사용료는 계속 부과됩니다.

■ **폐지:** 무선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아날로그의 경우, 무선국 폐지 시 디지털 전환정책에 따라 재신청 불가

기타 유의사항 안내

디지털 전환정책

'19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 신고 및 허가가 제한됩니다.

※ (참고) 기존 신고·허가된 아날로그 간이무선국에 대해서는 기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이 허용되며, 허가 갱신(재허가) 및 지위승계 또한 가능

부관사항

부관사항이란, 법령에서 정한 사항뿐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까지 규율하고 있으므로, 부관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여 무선국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구매 무선설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1대만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등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국내 기술기준에 부합해야 허가 및 신고 후 운용이 가능합니다. (구매 전 관련 기술기준 확인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crms.g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msit.go.kr
전파·방송통신민원: 080-700-0074

